일감법학 | 제33호
2016년 2월 275-307쪽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Ilkam Law Review
Vol.33, Feb., 2016. pp.275-307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

미얀마의 사법제도와 물권법*

The Judicial System and the Property Law of Myanmar

이 준 현**
Lee, Joon-Hyun

목 차

Ⅰ. 머리말
Ⅱ. 미얀마에 있어서 근대법의 수용
Ⅲ. 미얀마의 사법제도
Ⅳ. 미얀마의 물권법제
Ⅴ. 결론에 대신하여

미얀마에서는 오랜 기간의 군부통치가 종식되고 2011년 3월 민간정부가 출범하였다. 그러나 과거 군 최고사령관이었던 테인 세인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퇴역 군장성들이 여전히 민간정부의 실권을 가지고 있어서 진정한 민간정부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2015년 11월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2016년부터는 미얀마에 진정한 민주정부가 출범하게 되었다. 이로써 미얀마의 민주주의는 커다란 도약을 하게 되었고, 전 세계의 투자가 미얀마에 몰리게 되는 등 미얀마의 개혁・개방이 급속도로 전개될 전망이다. 미얀마는 2011년 민간정부가 들어선 후 새로운 법률들이 과거의 낡은 법률들을 급속도로 대체해 가고 있다.

미얀마는 1886년 영국의 식민지가 된 후 인도에 병합되어 통치되었으며, 그로 인해 영국의 판례법과 equity를 법전화한 인도법전(法典)의 강한 영향을 받았다. 이 인도법전을 기초로 미얀마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인 1954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던 중요법률들을 추가한 13권의 버마법전(法典)(The Burma Code)이 지금까지 미얀마 사회를 규율해 왔다.

투고일 : 2015. 12. 31. / 심사의뢰일 : 2016. 1. 26. / 게재확정일 : 2016. 2. 12.

* 본 연구자는 통일부의 요청으로 "미얀마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법제정비 지원 사례 연구"를 진행하고 2014. 12.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얀마의 사법제도와 기본 법률들에 대해서 조사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 논문은 이를 통하여 확인한 내용들 및 보고서 제출 이후에 새롭게 입수한 자료들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Professor of Sogang University Law School

2008년 신헌법의 제정과 함께 미얀마의 사법제도는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이 논문에서는 미얀마의 검찰・법원・변호사 조직의 구성과 운영 현황에 대한 중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미얀마에는 재산법과 가족법을 망라하는 단일 법전으로서 민법전(民法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우리의 민법전에 속하는 사항들을 규율하는 여러 개별 법률들이 제정되어 있다. 이러한 법률들은 19세기 말 영국의 민사판례법으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고 있다. 재산법 중 한 나라 법제의 고유성, 역사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은 물권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토지의 소유 관계에서 출발하여 그 소유권의 취득, 이를 위한 공시방법으로서 등기제도, 용익물권 및 담보물권을 중심으로 미얀마 물권법제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았다.

[주제어] 미얀마, 미얀마의 사법제도, 버마법전, 미얀마 민법, 미얀마 물권법

Ⅰ. 머리말

2011년 3월 반세기 동안 계속되었던 미얀마의 군부통치가 끝나고 민간정부에 의한 통치가 시작되었다. 과거 군 최고사령관이었던 테인 세인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미얀마 민간정부는 군부통치에 대한 국제적 비난과 제재를 피하려는 위장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지만, 개방적 시장경제를 향하여 지속적으로 발걸음을 앞으로 내딛었다.[1] 그 결과 50년 만에 미얀마 최대의 도시 양곤에 코카콜라 간판이 등장하고 세계적인 자동차회사들이 앞을 다투어 전시장을 개설하는 등 개혁・개방을 향한 미얀마의 발걸음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2015년 11월 우리는 이 나라에 대한 또 하나의 초대형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총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결과, 2016년부터 아웅산 수치를 사실상의 수반으로 한 진정한 민주정부가 출범하게 된다는 소식이다. 이로써 미얀마의 민주주의는 커다란 도약을 하게 되었고, 전 세계의 투자가 미얀마에 몰리게 되는 등 미얀마의 개혁・개방이 급속도로 전개될 전망이다.

이미 2011년의 개혁・개방이 있기 전부터 우리나라는 대우인터네셔널이 미얀마의 가스전을 개발하는 큰 성과를 올린 바 있고, 2011년 개혁・개방이 있고 난 후에는 개인과

1) 2011년 당시 개혁・개방의 당면목표는 2015년 ASEAN경제공동체의 공동설립에 미얀마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그 참여의 전제가 되는 시장경제화촉진・투자환경정비를 위하여 법・사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다.

각종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미얀마에 진출하고 있다. 2016년 미얀마에 진정한 민주정부가 출범하고 나면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임은 분명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우리나라에 있어서 미얀마의 사법제도와 기본 법률에 대한 소개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물론 가장 큰 이유는 미얀마의 군사독재 정권이 지난 50여 년 동안에 걸쳐 외국과의 교류를 금하는 극도의 폐쇄정책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외부에서는 미얀마의 기본법제 조차 알기 어려웠으며, 미얀마의 법제에 관한 신뢰할만한 외국문헌이나 논문들을 발견하기도 쉽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물론 선진국에서도 미얀마법 연구자는 매우 드문 실정이며, 미얀마의 법제도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 속에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제약 속에서 집필되었다. 본 연구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미얀마에 대한 최신의 법률정보를 입수하려 노력하였으나 한계가 있었다. 이 논문은 본 연구자가 나름대로 입수한 최신 문헌들과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여 미얀마의 사법제도와 기본 법률에 대한 개관을 소개할 목적으로 집필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미얀마의 근대법 수용 과정을 소개하고 검찰・법원・변호사 조직의 구성과 운영 현황에 대한 중요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부동산 소유권 취득을 중심으로 한 민사법의 중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미얀마는 2011년 민간정부가 들어선 후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2-3년 전의 자료는 이미 상황이 변화되어 사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고, 새로운 법률들이 속속 제정되거나 기존의 법률들이 개정되어 과거의 낡은 법률들을 대체해 가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활용하기 바란다.

Ⅱ. 미얀마에 있어서 근대법의 수용

1. 미얀마 땅에는 근세 초기까지 바간 왕조, 따웅우 왕조, 라카잉 왕조, 꼰바웅 왕조 등이 독립국가를 형성하면서 번성하였으나, 1826년, 1852년, 1885년 3회에 걸친 영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1886년 전 국토가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영국은 미얀마를 인접한 인도에 병합한 후 영국인 인도총독이 직접 통치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는 인도의회에서 제정된 인도법전(法典)이 미얀마 전역에 적용되었으며, 인도법전(法典)은 기본적으로 영국의 판례법과 equity를 법전화한 것이다.

1935년 영국은 미얀마를 인도에서 분리하여 자치령으로 만든 후 미얀마를 통치할 목적으로 버마통치법(The Government of Burma Act)을 제정(1937년)하였다. 버마통치법은 미얀마에 있어서의 최초의 헌법으로 이해된다. 버마통치법은 독자적인 입법기관을 두고 있었으며, 이 입법기관이 공포한 법만이 미얀마 국내에서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버마통치법 이후에 인도 의회에서 제정된 법은 더 이상 미얀마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1942년부터 1945년까지 미얀마는 일본의 점령・통치를 받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의 격화에 따른 3년 동안의 점령・통치에도 불구하고 일본법은 미얀마의 법발전에 아무런 영향도 남기지 못했다.[2)]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료와 함께 일본은 물러가고 영국에 의한 통치가 다시 시작되었지만, 미얀마는 1948년 결국 버마연방이라는 이름으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였다.[3)] 버마연방은 의회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원칙에 기반 한 통치체제를 채택하였으나, 1962년 네윈 장군이 주도한 군부쿠데타와 함께 민주주의는 종료되고 사회주의 일당독재가 시작되었다. 네윈의 통치기간 동안에는 삼권분립과 사법(司法)의 독립이 부정되었으며, 혁명평의회 또는 인민의회에 의해 적지 않은 행정법규가 제정되었다.

1988년 9월 네윈의 통치에 반대하는 전국적인 소요사태가 발생하자, 군은 치안회복을 명목으로 무력으로 네윈 정권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탈취하였다. 이와 함께 26년간 계속되어 온 버마식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었다. 군은 국가법질서회복평의회(State Law and Order Restoration Council: SLORC. 후에 국가평화개발평의회(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SPDC)로 명칭이 변경됨)를 조직하여 권력을 장악하였다. 군부통치하에 실시된 1990년 5월 의회 구성을 위한 총선거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The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NLD)이 압도적 다수의 의석(총 485석의 의회 의석 중 396석)을 획득하자, 군부는 돌연 정권이양을 거부하고 선거결과를 무시한 별도의 제헌의회를 설치하였다.

2008년 5월에는 위 제헌의회가 마련한 헌법초안이 국민투표를 거쳐 통과되었으며,

---

2) 그러나 2015년 현재 일본은 미얀마에 대한 법정비 지원에 매우 적극적이다. 일본은 2012.4. 일・미얀마 정상회담을 통해 미얀마에 대한 '법제도 정비 지원'을 결정하였다. 일본법무성은 이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 2012년 외무성, JICA(일본국제협력기구), 나고야대학과 함께 현지 법실태 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이를 기초로 하여 2013.8.22.에 '일・미얀마 법정비 지원 프로젝트'(기간 3년)을 개시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JICA가 주관하고 있으며, 미얀마법무부와 연방최고법원을 상대기관으로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미얀마의 법・사법 및 관계기관에 있어서, 시대에 적합한 법정비, 운용을 행하기 위한 조직적・인적 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1989년 국호를 미얀마(Myanmar)로 개칭하였다.

그 후 군부가 정한 민주화 7단계 로드맵에 따라 실시된 2010년 11월 총선에서 SPDC의 후신이자 여당인 통합단결발전당(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 USDP)이 압승을 거두었다.[4] 그 결과, USDP는 군 출신 의원단 25%를 합칠 경우 각급 의회에서 절대 다수를 확보하게 되었다. 총선 결과에 따라 2011년 1월 31일 20여 년 만에 상하원 및 지방의회가 개원하였으며, 의회는 전(前) 군최고사령관인 테인 세인을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민간정부를 출범시키게 된다. 그러나 여당 및 군부는 2015년 11월 총선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아웅산 수치의 NLD에 패배하였고, 야당에 의한 진정한 의미의 민간정부의 출범이 목전에 있다.

2. 네윈 통치하의 사회주의정권시대(1962년-1988년)와 이어서 나타난 군사정권시대(1988년-2011년)에는 통치를 목적으로 한 권위주의적인 행정법규의 제정이 주를 이루었고, 당시에 제정・공포된 행정법규들은 대부분 미얀마어로만 되어 있어 그 내용을 알기 어렵다. 또한 네윈 정권 및 그 뒤의 군사정권은 외부세계에 대하여 매우 폐쇄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였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어떠한 법령이 개폐되고 어떠한 법령이 새로 제정되었는지 그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입수는 매우 쉽지 않다. 이러한 통치목적으로 제정된 행정법규들을 제외한다면, 미얀마에 있어서는 식민지시대에 마련된 사법제도와 제정・공포된 법률들이 그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큰 변화 없이 최근까지 그대로 이어져 왔다. 이러한 법률들은 인도법문화에 의한 변형을 거친 영국법, 인도법의 강한 영향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3. 미얀마의 현행 법령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버마법전(法典)(The Burma Code)이 있다. 이 법전은 영국식민지 시대에 영국령 인도에서 제정된 인도법전(法典)을 기초로 하면서 미얀마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인 1954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던 중요법률들을 모두 모은 것이다. 단 1942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점령 하에 공포된 법령들은 이 법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버마법전은 영어로 되어 있고 전 13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권 총칙, 섭외관계, 헌법, 제2권 방위, 제3권 재정・세입, 제4-5권 일반행정, 제6권 통치제도, 제7권 운수・통신, 제8권 형사법, 제9권 불법행위, 계약, 보험, 대리, 회사, 제10권 토지, 등기, 재산이전, 공유지분배・토지수용,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 제11권 사법(私法), 상속, 파산, 중재, 특별구제, 제12권 민사소송, 증거, 제13권 특구・자치구

4)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NLD는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

등 광범위한 영역을 규율하고 있다. 영국판례법을 성문화한 인도법전이 법조문에 사례 주해(事例註解)를 부가하는 스타일을 취하였던 것처럼, 버마법전도 마찬가지의 스타일을 취하고 있다. 이 버마법전에 수록된 민・상사법 관련 법률들은, 명시적으로 폐지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현재에도 기본적으로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형법, 형사소송법이 포함된 제8권은 1979년에 재판(再版)이 간행되었기 때문에 정보가 갱신되어 있다. 미얀마정부는 버마법전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법률들의 개폐를 급박한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그밖에 정부고시(notification), 공고(declaration), 명령(order), 규칙(rule) 등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것들은 미얀마어로만 되어 있다.

Ⅲ. 미얀마의 사법제도

1. 법원[5]

법원[6]은 ① [연방 최고법원(Supreme Court of the Union)] - [주 고등법원(High Court of the State), 관구 고등법원(High Court of the Region)] - [지방법원(District Courts), 자치관구 법원(Courts of the Self-Administered Division), 자치지역 법원(Courts of the Self-Administered Zone)] - [군(郡)법원(Township Courts) 및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타 법원], ② 군사법원, ③ 연방 헌법재판소로 구성되어 있다(헌법 제293조).

미얀마의 법원은 3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단독심(單獨審)이 원칙이다. 중대한 법률사건의 경우에 연방 최고법원에 한정하여 2명 또는 3명의 재판관에 의한 합의제로 운영된다.

---

5) 법원에 관해서는 U Sein Than, “Structure and Functions of Courts in Myanmar”, 慶應法學 第27号, 慶應義塾大學校法學研究所, 2013, 39쪽 이하, U Tu Jar,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Myanmar”, 慶應法學 第27号, 慶應義塾大學校法學研究所, 2013, 56쪽 이하, Daw Thin Thin Nwe, “The Procedure Dealing With Civil Suits in Myanmar Judiciary”, 慶應法學 第27号, 慶應義塾大學校法學研究所, 2013, 77쪽 이하, 森・濱田松本法律事務所, ミャンマー聯邦共和國法制度調査報告書(1次), 法務省法務總合研究所, 2013, 183쪽 이하, 법제처, 미얀마 경제・투자법령정보, 법제처, 2012, 13쪽 이하 그리고 鮎京正訓(編), アジア法 ガイドブック, 名古屋大學出版會, 2010, 296쪽 이하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6) 법원의 조직과 구성은 2008년 제정・공포된 미얀마 헌법 ‘제6장 사법(司法)’이 그 기초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여 2010.10. 새로이 법원조직법이 제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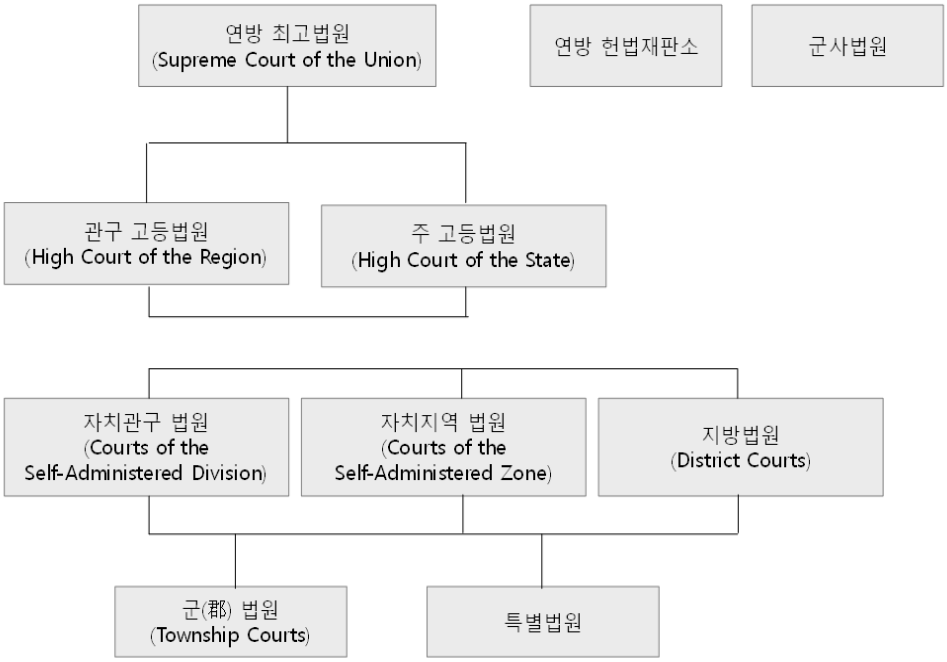

〈그림 1〉 미얀마의 법원 조직

1.1 연방 최고법원

연방 최고법원은 미얀마의 수도인 네피도에 있으며, 미얀마에 있어서 최상급의 상소법원이다. 연방 최고법원의 장(長)은 '연방 최고법원 장관'이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현행 헌법상 연방 최고법원의 재판관은 장관을 포함하여 최소 7명, 최대 11명이지만, 현재에는 장관을 포함하여 7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미얀마 헌법에 따르면, 연방 최고법원의 장관 또는 재판관은 정당정치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헌법 제300조). 그러나 ① 연방 최고법원의 장관 또는 재판관의 임명이 대통령 지명과 연방의회의 승인에 달려 있고(헌법 제299조), ② 대통령 또는 하원이나 상원의 의장에 의한 탄핵이 가능하다는 점(헌법 302조)에서 사법권의 독립이 약화될 여지도 남아 있다.[7]

연방 최고법원은 일반 상고사건과 재심사건을 심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

7) 森・濱田松本法律事務所, ミャンマー聯邦共和國法制度調査報告書(1次), 185쪽.

라 다음의 사건들을 심리할 수 있는 독점적인 관할권도 가지고 있다.

- 연방정부에 의해 체결된 2국간조약에 기인하는 사항
- 헌법문제를 제외하고, 연방정부와 관구 또는 주정부와의 사이에 발생한 기타의 분쟁
- 헌법문제를 제외하고, 관구 간, 주 간, 관구와 주 간, 연방과 관구 또는 주 간에 발생한 기타의 분쟁
- 국제적인 수역 또는 공역에서 범하여진 해적질 그리고 육상이나 국제적 수역 혹은 공역에서 국제법에 반하여 범하여진 범죄
- 법률에 의해 특별히 규정된 사건

다만 연방 헌법재판소와 군사법원의 관할 사건은 연방 최고법원이 재판할 수 없다.

연방 최고법원에 의해 독점적인 관할권이 행사되어 최종적으로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건 또는 다른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연방 최고법원이 최종적으로 확정판결을 내린 사건이라 하더라도, 연방 최고법원의 2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특별법정에 의해 특별상고가 인정된 경우에는, 특별상고법정이 위 사건들을 다시 심리하여 새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특별상고법정은 연방 최고법원 장관과 2명의 연방 최고법원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연방 최고법원은 민사사건 및 형사사건 판결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만 특별상고에 의해 개입한다. 특별상고법정의 판결은 최종적이고 또 확정적이다.

한편, 연방 최고법원은 인신보호영장 등의 영장을 발부할 권한 및 연방의 모든 일반법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 연방 최고법원의 판단은 모든 법원을 구속한다. 연방 최고법원은 필요에 응하여 원칙, 규칙, 통달, 명령, 지시, 절차 및 매뉴얼을 발(發)할 수 있으며, 연방의회에 대하여 규정된 절차에 따라 사법관련 예산안 및 법률안을 제출할 권한도 가지고 있다.

1.2 주 고등법원과 관구 고등법원

미얀마는 7개의 주(State)와 7개의 관구(Region)로 이루어져 있고, 각 주와 관구에 고등법원이 하나씩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미얀마에는 총 14개의 고등법원이 있다. 각 주 및 관구의 고등법원에는 장관을 포함해서(주・관구 고등법원의 수장도 또한 장관으로 불린다.) 최소 3명, 최대 7명의 재판관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어 있다. 2012년 현재 고등법원 판사의 수는 52명이며, 그 가운데 남성재판관이 36명, 여성재판관이 16명이다.

고등법원은 항소심으로서, 그 하급법원인 자치관구 또는 자치지역의 법원, 지방법원

과 군(郡)법원이 내린 판결, 명령, 결정에 대해 심리하고 법적 판단을 내린다. 또한 그 주 또는 관구 내의 어떤 법원으로부터 다른 법원으로의 사건의 이송에 관하여 재판하며, 그 주 또는 관구에 속하는 모든 법원을 감독한다.

1.3 지방법원, 자치관구 법원과 자치지역 법원

모든 일반지방법원(이하 '지방법원')에는 연방 최고법원에 의해 기본적으로 1명의 판사가 임명되어 있고, 각 지방법원의 업무량에 따라 추가적으로 판사와 판사보(補)가 임명된다. 지방법원은 미얀마 전국에 67개가 설치되어 있다. 2012년 현재 전국의 지방법원 판사의 수는 146명이며, 그 중 70명이 남성, 76명이 여성재판관이다.

지방법원 판사는 사형 또는 무기형을 부과할 수 있는 중대한 형사사건과 소송물의 가액에 따른 일정 범위의 민사사건, 소액 민사사건에 대해 제1심법원으로서 재판하며, 관할지역 내에 있는 모든 군(郡)법원의 사법 관련 업무를 감독한다.

한편, 자치관구와 자치지역에는 2008년 헌법 및 2010년의 법원조직법에 따라 지방법원과 같은 위계의 자치관구 법원과 자치지역 법원이 설치되었다.

1.4 군(郡)법원(Townshipcourt)

지방법원과 마찬가지로 모든 군(郡)법원에는 연방 최고법원에 의해 기본적으로 1명의 군(郡)법원 판사가 임명되어 있다. 업무량이 많은 군(郡)의 경우, 연방 최고법원에 의해 추가적으로 판사 또는 판사보(補)가 임명될 수 있다. 2012년 현재 미얀마 전국에는 총 324개의 군(郡)법원이 존재하며, 738명의 군(郡)법원 판사가 재직하고 있다. 그 가운데 남성이 446명, 여성이 292명이다.

군(郡)법원은 제1심의 재판권을 가지는 법원이다. 소액사건 또는 소송물의 가액이 1,000만 짯[8]을 초과하지 않는 민사사건은 군(郡)법원 판사 및 추가적으로 임명된 군(郡)법원 판사가, 소액사건 또는 소송물의 가액이 300만 짯을 초과하지 않는 민사사건은 군(郡)법원의 판사보(補)가 재판한다.

한편 군(郡)법원 판사는 징역 7년까지의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치안판사(Magistrate)로서의 권한을 특별히 부여받고 있다. 치안판사로서의 권한을 특별히 부여받은, 추가적으

8) 짯(Kyat)은 미얀마의 화폐 단위이며, 1짯은 우리 돈으로 1.02원에 해당한다(2015.12.5. 기준).

로 임명된 군(郡)법원 판사도 징역 7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9] 군(郡)법원의 판사보(補)는 그보다 가벼운 형사사건을 재판한다.

1.5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타 특별법원

각종 특별법에 기초하여 연방 최고법원에 의해 설치된 특별법원으로는 소년법원, 도시범죄법원, 교통범죄법원 등이 있다. 이러한 특별법원은 모든 주・관구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양곤시, 만달레이시, 네피도시 등 대도시에 한정된다. 특별법원의 판사 수는 2012년 현재 총 23명이다.

2. 연방 법무부(Union Attoney General's Office)

미얀마의 연방 법무부 제도는 영국 식민지 시절 영국 보통법체계의 영향을 받은 것이며, 당시부터 그 주된 역할은 형사 또는 정부관련 민사소송에 있어서 정부를 위해 일하거나 정부를 대신하여 법원에 나가고 정부의 법률자문 요청에 응하는 것이었다.[10]

현재의 연방 법무부는 2010년의 연방 법무부법(Attoney General of the Union Law)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일본의 법무・검찰・내각법제국을 통합한 것과 같은 조직이다. 연방 법무부의 수장인 연방 법무부장관(Attoney-General)은 대통령, 부통령(2인), 각 연방장관들과 함께 연방정부를 구성하지만, 그 지위에 있어서는 연방 법무부법의 적용을 받는다. 연방 법무부장관은 법률문제에 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관련 정부부처 또는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 결정, 지시, 행동지침, 절차 그밖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연방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이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며, 그 임기는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5년이고 대통령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연방 법무부는 이하의 4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서가 담당하는 업무는 아래와 같다.

- 법령심사・기초국(Law Scrutiny and Drafting Department) : 법안작성,[11] 법률개정안

9) U Tu Jar,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Myanmar, 58쪽.

10) 연방 법무부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법제처, 미얀마 경제・투자 법령 정보, 224쪽 이하 참조.

11) 미얀마 헌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해 헌법 별표 1의 리스트에 규정하는 부문 및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연방의회가, 헌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해 헌법 별표 2의 리스트에 규정하는 부문 및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주 또는 관구의 의회가 법률을 제정할 권리를 가진다.

작성, 다른 관계부처 또는 기관이 기초한 법안초안에 대한 수정, 법률의 영문번역, 검찰관연수의 실시 등
- 법령자문국(Legal Advise Department) : 다른 국가기관에 법적 어드바이스 제공 등
- 검찰국(Prosecution Department) : 검찰 업무. 단, 수사권한은 없고 소추만을 담당.
- 총무국(Administration Department) : 총무

주 또는 관구에 있어서는 주 법무감 또는 관구 법무감(Advocate General of the Region or State)이 연방 법무부장관의 역할을 수행하며(연방 법무부법 제21조, 제26조, 제27조), 주지사 또는 관구 지사(Chief Minister of the Region or State)는 법률자문에 응하고 법률관련 사무를 배분하기 위하여 주 법무감 또는 관구 법무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배당할 권한이 있다(헌법 제266조). 주 법무감 또는 관구 법무감의 업무이행에 대한 감독 및 지시는 연방 법무부장관이 한다.

3. 검찰 조직과 그 구성

미얀마에 있어서 검찰의 업무는 연방 법무부 검찰국이 담당하고 있다. 검찰국은 연방 법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① 국가를 대리하여 연방 최고법원에 영장의 발급을 신청하고, ② 법률에 따라 법원에 형사사건의 공소를 제기하며, ③ 연방을 대표하여 형사사건의 소송을 수행한다. 즉,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권한은 없고 소추만을 담당한다. 그밖에 ④ 연방정부가 원고 또는 피고가 된 민사사건에서 연방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⑤ 연방 최고법원이 독점적인 관할권이 있는 연방 관련 사건의 재판에 있어서 국가를 대리하며, ⑥ 주 또는 관구 고등법원이 내린 연방 관련 사건에 대한 판결, 명령, 결정에 대해 항소 또는 상고가 필요한 경우 이를 행한다는 점에서는 우리와 다르다.

검사(Officer)는 연방 법무부 검찰국에 소속된 국가공무원으로, 연방 법무부는 부정기적으로 검사선발을 위한 국가시험을 실시하며, 이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검사가 될 수 있다. 위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면 법학사 또는 이것과 동등한 학위가 있어야 하며, 25세 이하이어야 한다. 단, 재판소직원 등 이미 공무원의 직에 있던 자이면 그 연령제한은 30세 이하까지 완화된다. 위 국가시험 응시자는 법학(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증거법, 특별법)・일반지식・영어・미얀마어의 각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치르며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면접시험을 볼 수 있다.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통과하여야 검사가 될 수 있다. 합격자는 공무원 일반에 요구되는 연수와 검사후보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를 거쳐 검사로 채용되게 된다.[12)]

검사로 구성된 검찰 조직은 연방 법무부를 정점으로 하여 이하의 4단계로 나누어진다.

- 연방 법무부 검찰국
- 주・관구 고등검찰청(State/Regional Law Offices): 주 7개소, 관구 7개소
- 지방검찰청(District Law Offices) : 65개소
- 군(郡)검찰청(Township Law Offices) : 325개소[13)]

4. 변호사 조직과 그 구성

미얀마에 있어서 변호사는 법정(法庭)변호사(Advocate)와 수련변호사(Higher Grade Pleader)로 구별된다. 양자의 차이는 법정변호사는 연방 최고법원을 포함한 모든 법원에 입회(立會)할 수 있는 반면에, 수련변호사는 연방 최고법원 이외의 법원에의 입회만이 인정된다는 점에 있다.[14)]

수련변호사로 되기 위해서는 법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1년간의 인턴을 경험하여야 한다. 변호사가 되기 위한 별도의 자격시험은 없다. 인턴시기에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법정변호사 밑에서 155회 이상의 재판에 입회하여 매 회 재판관으로부터 추천장을 받은 후, 155매 이상의 추천장을 첨부한 신청서를 연방 최고법원에 제출해서 수련변호사 자격을 취득한다.

수련변호사가 법정변호사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수련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에 걸쳐서 군(郡)법원 5개소의 판사, 지방법원 1개소의 판사, 주・관구 고등법원 1개소의 판사로부터 합계 7매의 추천장을 받아야 한다. 이 추천장을 첨부하여 연방 최고법원에 법정변호사로의 승격을 신청하고 연방 최고법원의 인가가 있으면 법정변호사로 승격된다. 다만, 그 승격이 신청자에게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연방 최고법원은 모든 변호사에 대하여 신분증명서를 교부하고 있으며, 자격을 취득한 순으로 번호가 부여한다. 2012년 6월 현재 미얀마 국내의 변호사 수는 법정변호사가 약 8,000명, 수련변호사가 약 30,000명에 달하고 있다.[15)]

---

12) 國井弘樹, “ミャンマー現地調査報告-ミャンマー法曹界の實情”, ICD News 第52号, 法務省法務總合研究所, 2012, 7-8쪽.

13) 國井弘樹, ミャンマー現地調査報告-ミャンマー法曹界の實情, 7쪽.

14) 법정변호사와 수련변호사의 차이는 최고법원에의 입회권한의 유무에 있기 때문에, 법정변호사를 “Supreme Court Advocate”라고 부르는 일도 있다.

Ⅳ. 미얀마의 물권법제

1. 들어가는 말

미얀마에는 재산법과 가족법을 망라하는 단일 법전으로서 민법전(民法典)은 존재하지 않는 반면, 우리의 민법전에 속하는 사항들을 규율하는 여러 개별 법률들이 제정되어 있다. 그 중 재산법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들로는 재산이전법(The Transfer of Property Act), 등기법(The Registration Act), 동산매매법(The Sale of Goods Act), 계약법(The Contract Act), 특정구제법(The Special Relief Act), 조합법(The Partnership Act)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법률들은 모두 앞서 언급한 버마법전(法典)[16]에 수록되어 있다. 버마법전(法典)이 당시의 인도법전(法典)을 모방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법률들이 19세기 말 영국의 민사판례법으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버마법전(法典)에 수록되어 있는 미얀마 계약법의 기본 규정들은 1872년의 인도 계약법의 제 규정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으며, 인도 계약법은 그 제정 당시의 영국의 계약법 판례들을 법전화 하여 인도에 적용하려고 제정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위 법률들 중 미얀마의 물권에 관한 법제의 내용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왜냐하면 재산법 중 물권편은 채권편에 비하여 한 나라 법제의 고유성, 역사성을 여실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토지의 소유 관계에서 출발하여 그 소유권의 취득, 이를 위한 공시방법으로서 등기제도, 용익물권 및 담보물권을 중심으로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 볼 것이다.

한편 미얀마의 가족법제에 대해서는 최근 이를 소개하는 논문이 발표된 바 있으므로[17] 이를 참조하기 바란다.

2. 토지의 소유 관계

미얀마에 있어서 토지는 크게 자유지(Freehold Land), 허가이용지(Permit Land/Grant Land) 그리고 농지(Agricultural Land)로 나뉜다.[18] 2008년 미얀마 헌법은 국가가 원칙적

15) 國井弘樹, ミャンマー現地調査報告-ミャンマー法曹界の實情, 8쪽.

16) 버마법전(法典)은 인터넷 사이트 <http://www.burmalibrary.org> 에서 그 내용을 볼 수 있다.

17) 문흥안, "미얀마 가족법의 현황과 과제", 가족법연구 제28권 제2호(통권50호), 한국가족법학회, 2014, 275쪽 이하.

으로 모든 토지의 최종적인 소유자임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있다(헌법 제37조 a항). 그러나 조상으로부터 상속한 땅인 자유지는 개인의 소유권이 확정되어 있고 양도가능하며 국가가 이를 수용하려면 현금 또는 대체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하므로, 결국 국가의 토지 독점 소유는 허가이용지와 농지에 한정된 것으로 보인다.[19]

미얀마 국민은 관계 당국의 허가를 얻어 허가이용지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이 허가되는 기간이나 목적은 장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허가이용지에는 건물을 짓는 것도 인정된다. 농업용 이외의 허가이용지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것도 가능하나, 다만 그 내용을 토지행정국(Land Administration Office)에 통지하여야 한다. 모든 농지 또한 국가의 소유이고 자동적으로 토지의 임차인이 되는 농민에게 재임차되며, 농민의 농지의 사용과 양도, 임대에는 제한이 있다.[20]

결국, 미얀마에 있어서 사인(私人)이 토지 이용에 관해서 국가의 허가(permit)를 얻었다면, 토지의 이용 및 처분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법상의 토지소유자와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는 권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미얀마에 있어서 외국인의 토지 소유는 금지된다. 부동산양도제한법(The Transfer of Immovable Property Restriction Act 1987)은, ①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 부동산을 매각, 증여, 교환, 담보의 제공 기타 형태로 양도하는 것과(동법 제3조) ②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보유한 회사가 부동산을 매입, 수증, 교환, 담보의 제공을 받는 형식으로 양수하는 것을 모두 금지하며(동법 제4조), 이를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다. 또한 미얀마 국민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외국인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수 없다(동법 제5조).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그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별도로 등록하여야 하며(동법 제8조), 외국인이 사망한 경우 또는 출국해서 영원히 돌아오지 않거나 축출된 경우에는 국가는 외국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상속권을 인정 또는 몰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동법 제6조).

한편, 2012년 전면개정 된 외국인투자법은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할 목적으로, 미얀마 투자위원회(MIC)가 그 사업의 종류 또는 투자액에 따라 외국인이 최대 50년간 토지를 이용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 기간 만료 후에는 10년씩 2회 이를 연장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31조 및 제32조).[21]

---

18) 박정훈, "미얀마의 토지이용제도", 토지공법연구 제59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12, 2쪽, 8쪽.

19) 다만 자유지는 주요 큰 도시와 도시에만 있고 작은 도시나 마을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의 대부분이 국유에 속하는 것은 분명하다(박정훈, 위의 논문, 8쪽).

20) 박정훈, 위의 논문, 10쪽.

3. 매매 등에 의한 부동산, 동산의 소유권 취득

3.1 부동산과 동산의 개념

미얀마의 법률에서도 부동산과 동산은 구별되며 그 법적 취급을 달리 한다. 미얀마의 등기법은 부동산과 동산에 각각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고 한다.

〈표 1〉 부동산과 동산

용어	정의
부동산 (등기법 제2조 제6항)	・토지(lands) ・건물(buildings) ・토지에서 생기는 수익(hereditary allowances) ・통행권(right to ways), 일조권(right to lights), 항행권(right to ferries), 어업권(right to fisheries) 기타 토지에서 생기는 이익 ・토지의 부착물 또는 토지의 부착물에 영속적으로 고정된 것(立木, 작물 및 풀은 제외)
동산 (등기법 제2조 제9항)	・입목(standing timber) ・생육 중인 작물(growing crops) ・풀(grass) ・나무에 열린 과실 및 나무의 樹液 ・기타 부동산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재산(property)

반면에 재산이전법은 적극적으로 부동산을 정의하는 대신에 소극적으로 입목, 생육 중인 작물, 풀은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3조). 한편 부동산양도제한법은 부동산에 대해서만 명문규정을 두고 있는바, 동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 토지에서 생기는 수익, 토지에 건축된 건물이나 토지에 위치하는(situated) 것 그리고 건물에 부착된(installed) 것들을 말한다(동법 제1조 제2항 (d)).

미얀마에 있어서는 우리와 달리 토지와 건물이 각 별개의 권리의 객체로 인식되지 않으며, 건물은 토지의 부착물로서 토지와 일체적으로 파악되고 있다.

3.2 부동산의 매매

부동산의 매매에 대해서는 재산이전법이 적용된다. 재산이전법은 재산의 매매, 담보설정, 임대 등 재산의 이전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

21) 개정된 외국인투자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강대창, "미얀마 신외국인투자법 주요 내용과 대응방안", KIEP 지역경제 포커스 Vol.6 No.3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12, 5쪽 이하 참조.

재산이전법에 따르면, 100루피(짯)[22] 이상의 가치가 되는 부동산 매매는 등기문서(registered instrument)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그 가치가 100 짯 미만인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문서에 의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서면 없이 해당 부동산의 인도(delivery)만으로도 가능하다. 부동산의 인도는 매도인이 매수인으로 하여금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도록 함으로써 성립한다.

외국인에 의한 부동산의 매매 등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부동산양도제한법이 적용되므로, 외국인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3.3 동산의 매매

동산 매매에 대해서는 재산이전법이 적용되는 외에, 그 동산이 '물품'(goods)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동산매매법도 함께 적용된다. 동산매매법에 있어서 '물품'이란 채권(actionable claims)과 금전 이외의 모든 종류의 동산이 이에 해당하며,[23] 주식, 생육 중인 작물, 풀, 그리고 매매에 앞서 또는 매매계약에 따라 토지에서 분리하기로 합의한, 해당 토지에 부착되어 있거나 해당 토지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 이에 포함된다(동법 제2조 7호).

동산에 대해서는 개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므로 그 매매 등에는 원칙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일부의 문헌은 미얀마에 있어서는 우리의 동산 선의취득에 해당하는 법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때문에 매수인이 동산을 매수할 경우에는 매도인이 소유권 기타 해당 동산을 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신중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24] 그러나 동산의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거래의 안전이 어떻게 보호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한편, 미얀마에 있어서는 매도인이 물품을 매도한 후에도 이를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 해당 매매에 대해 알고 있지 않은 제3자가 그 매도인으로부터 해당 물품의 양도, 담보설정, 기타 처분에 따라 선의로 해당 물품을 인도 또는 이전받은 때에는, 그 인도 또는 이전은 권리자로부터 명시적 수권을 받고서 행하여진 인도 또는 이전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동법 제30조 제1항). 우리의 동산 이중매매의 유효성 인정과 유사한

22) 재산이전법상 루피로 표시되어 있지만, 규칙(order) 혹은 명령(direction)에 따라 미얀마의 통화인 짯으로 치환하여 읽으며, 또한 구체적인 금액은 공고에 의해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23) 따라서 개념적으로만 본다면 등기법상의 '동산'(movable property)보다는 그 포섭범위가 좁다고 할 수 있다.

24) 박광동/조은래, 미얀마 물권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4, 116쪽 이하.

규정이다.

4. 미얀마의 등기제도

부동산의 매매 및 소유권 이전은 공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등기제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얀마는 한국처럼 각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과 권리 관계 그 자체를 등기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권리 변동에 관한 일정한 문서를 등기의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이다(이른바 Recording System). 이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주고받은 문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면 이를 시간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이해관계인들이 편철된 등기공부(Book)에서 관련 문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색인(Index)을 만들어 보관하고 있을 뿐, 해당 부동산이 누구의 소유인지 권원의 상태에 대하여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는다.[25]

4.1 등기의 대상

문서는 의무적으로 등기의 대상이 되는 문서와 그 등기가 임의적인 문서로 나눌 수 있다.

4.1.1 의무적인 등기의 대상

일정한 예외[26]를 제외하고, 이하의 문서가 의무적인 등기의 대상이다(등기법 제17조 제1항 각호).

(a) 부동산의 증여에 관한 문서
(b) 유언장이 아닌 문서로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 권원 또는 이익으로 그 가치가 100루피 이상의 것을, 그것들이 확정적인 것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25) 레코딩 시스템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부동산등기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2015, 91쪽 이하 참조.

26) 대통령은, 관보에 게재된 명령에 의해, 어느 관할지역(또는 그 지역의 일부)에 있어서 (i) 그 기간이 5년을 넘지 않고, (ii) 연간 50루피를 넘지 않는 차임을 받고 행하여지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등기할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등기법 제17조 제1항 단서).

있어서 창조, 선언, 양도, 제한 또는 소멸시키는 내용의 문서
(c) 유언장이 아닌 문서로서, 위에 언급한 권리, 권원 또는 이익의 창조, 선언, 양도, 제한 또는 소멸로 인해 어떠한 대가를 받거나 지급을 확인하는 문서
(d) 1년 단위나 기간이 1년을 넘는 부동산 임대차 또는 1년 단위로 차임을 지급하는 부동산 임대차에 관한 문서
(e) 부동산에 관한 권리, 권원 또는 이익으로 그 가치가 100루피 이상의 것을, 그것들이 확정적인 것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있어서 창조, 선언, 양도, 제한 또는 소멸시키는 내용의 법원 판결이나 명령 또는 중재 판정이 있을 경우, 그러한 판결, 명령 또는 중재 판정의 집행에 관한 유언장이 아닌 문서

덧붙여, 등기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서 위 (b)와 (c)의 문서에 대해 의무적 등기의 예외가 규정되어 있다.

4.1.2 임의적인 등기의 대상

다음의 문서는 임의적으로 등기할 수 있다(동법 제18조 제1항 각호).

(a) 유언장이나 증여에 관한 문서가 아닌 문서로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 권원 또는 이익으로 그 가치가 100루피 미만의 것을, 그것들이 확정적인 것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있어서 창조, 선언, 양도, 제한 또는 소멸시키는 내용의 문서
(b) 위에 언급한 권리, 권원 또는 이익의 창조, 선언, 양도, 제한 또는 소멸로 인해 어떠한 대가를 받거나 지급을 확인하는 문서
(c) 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 부동산 임대차 및 등기법 제17조에 규정이 없는 임대차에 관한 문서
(d) 유언장 이외의 문서로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 권원 또는 이익을 현재 또는 장래에 있어 창조, 선언, 양도, 제한 또는 소멸시키는 내용의 문서
(e) 유언장
(f) 기타 등기법 제17조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문서

4.2 등기공부와 색인의 작성 및 교부

등기부는 등기공부(Book)와 색인(Index)으로 이루어진다. 등기의 대상에 상응하여 5종

류의 등기공부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등기공부 1(Book 1): 부동산에 관한, 유언장이 아닌 모든 문서의 등기
등기공부 2(Book 2): 등기 거절에 대한 이유의 기록
등기공부 3(Book 3): 유언장(wills)과 관계 당국의 채택의 등기
등기공부 4(Book 4): 그밖의 각종 등기
등기공부 5(Book 5): 유언장 예탁의 등기

등기공부 1-4는 모든 등기소에, 등기공부 5는 등기관이 있는 등기소에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동법 제51조 제1항). 등기공부 1에는 등기법 제17조, 제18조 그리고 제89조에서 등기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 관련 문서(유언장 제외) 또는 메모(memoranda) 모두가 수록 내지 편철되어 있다(동법 제51조 제2항). 등기공부 4에는 등기법 제18조 (d)와 (f)에서 등기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과는 관련이 없는 문서 모두가 수록되어 있다(동법 제51조 제3항).

문서가 제출되면 문서가 제출된 날짜, 시각, 장소 그리고 제출자의 서명이 제출된 모든 문서에 즉시 기록되어야 하며, 등기관은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등기가 승인된 문서는 불필요한 지체 없이 승인된 순서에 따라 적절한 등기공부에 편철된다(동법 제52조 제1항).

등기공부에 편철되어 있는 모든 등기서류(Entries)에는 번호가 매겨진다(동법 제53조).

등기사무관은 문서를 복사하거나 메모를 등기공부에 편철하고 난 후 실무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지체 없이 색인(Index)을 작성하여야 하며, 등기공부를 비치하고 있는 모든 등기소에는 현재 그 등기공부에 편철되어 있는 서류들의 색인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동법 제54조). 예컨대, 등기공부 1(Book 1)에 대응하는 색인이 색인 1(Index 1)이며, 색인 1에는 등기공부 1에 수록된 문서나 메모에 서명하였거나 이 문서 등을 기초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자 전원의 이름과 기타 정보가 들어 있어야 한다(동법 제55조 제1항, 제2항). 각 색인에는 그밖에 등기감사관장(Inspector-General of Registration)이 수시로 지시한 사항들이 기재되어야 한다(동법 제55조 제6항).

등기공부 1과 2 및 색인 1은 수수료를 내면 누구라도 열람할 수 있으며 등기공부에 수록된 등기서류의 사본을 발급받을 수도 있다. 사본에는 등기관이 서명 날인하며 원본의 내용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이용될 수 있다(동법 제57조 제1항, 제5항).

4.3 등기의 절차

4.3.1 등기신청권자

다음의 사람은 등기법상 등기의 대상이 되는 문서를, 그 문서가 의무적인 등기의 대상이냐 아니면 임의적인 등기의 대상이냐 여부에 상관없이, 해당 등기소에 제시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동법 제32조).

(a) 해당 문서에 서명하였거나 해당 문서를 기초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 단 문서가 판결 또는 결정인 경우에는 해당 판결 또는 결정을 기초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
(b) 위에 언급한 사람의 법률상의 대리인 또는 그 대리인 지위의 양수인
(c) 등기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증된 서명한 위임장에 의한, 위 (a)와 (b)에 언급한 사람의 임의대리인(agent)

4.3.2 문서의 제출기간

등기의 대상이 되는, 유언장이 아닌 문서는 서명 후 4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 문서가 판결 또는 결정인 경우에는 판결 또는 결정이 있은 후 4개월 이내에, 상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판결 또는 결정 확정 후 4개월 이내에 판결 또는 결정의 사본이 제출되어야 한다(동법 제23조). 하나의 문서에 복수의 사람이 시간을 달리 하여 서명한 경우에는, 그 문서는 각각의 서명 때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동법 제24조).[27]

4.3.3 첨부 서류

유언장이 아닌 부동산 관련 문서를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 문서의 부동산이 해당 부동산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갖고 있는 않는 한, 그 문서의 등기가 접수되지 않는다(동법 제21조 제1항). 유언장이 아닌 부동산 관련 문서가 지도나 계획도를 포함할 경우에는 해당 지도나 계획도의 원본을 첨부하지 않는 한 등기가 접수되지 않는다(동법 제21조 제4항).

---

27) 긴급한 필요 또는 부득이한 사고 때문에 위의 기간 내에 문서가 제출되지 못한 경우 및 서명자의 일부 또는 전부가 국외에서 서명하느라 그 문서가 기간 내에 제출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등기법 제25조와 제26조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제출기간이 종료한 때로부터 4개월을 넘지 않은 기간 내이면 등기관은 법정수수료의 10배를 넘지 않는 벌금의 지불을 명령하고 등기를 접수하도록 할 수 있다. 한편 후자의 경우에는 (i) 해당 문서가 서명되었다는 것, (ii) 해당 문서가 국내에 반입된 지 4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있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통상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등기를 접수할 수 있다.

한편, 등기를 위하여 제시된 문서를 등기관이 이해할 수 없거나 그 문서가 그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언어로 기재된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로 번역한 번역본을 원본에 첨부하여야 한다(동법 제19조).

등기를 위하여 제출된 문서에 행간에 써넣은 부분이 있거나, 공란 부분 또는 삭제된 부분이 있거나, 내용이 수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서명자가 서명 또는 이니셜의 기재로 이들이 진정한 것이라고 증명하지 않는 한, 등기관은 그 등기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고, 이미 접수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그러한 취지를 주를 붙여 기재하여야 한다(동법 제20조).

4.3.4 등기 전 청문

등기법에 따른 어떠한 문서도 등기신청권자가 문서제출기간 내에 등기관 앞에 출두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등기되어서는 안된다(동법 제34조 제1항).

출두가 이루어지면, 등기관은 (a) 해당 문서가 서명하여야 할 자에 의해 서명되었는지 여부를 묻고, (b) 등기관 앞에 출두한 사람이 문서에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동일인인지에 대하여 확인하며, (c) 어떠한 자가 서명한 자의 법률상의 대리인, 양수인 또는 임의대리인으로서 출두하는 경우에 그러한 자가 대신 출두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동법 제34조 제3항)

등기관은 자신 앞에 출두한 사람이 주장하는 인물과 동일 인물이라는 점을 확신하기 위해서나 이 법이 추구하는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하여, 등기소에 출두한 사람을 조사할 수 있다(동법 제35조 제2항). 만약 (a) 그 문서에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그 서명을 부인하는 경우, (b) 출두한 사람이 등기관에게 있어서 미성년자나 바보 또는 정신질환자로 보이는 경우, (c) 그 문서에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였고 그의 법률상의 대리인 또는 양수인이 그 서명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그 문서를 등기하는 것을 거절하여야 한다(동법 제35조 제3항)

4.3.5 등기 승인 절차

등기가 승인된 문서(판결이나 결정의 사본 제외)에는 수시로 다음의 사항들이 기입되어야 한다(동법 제58조 제1항).

(a) 해당 문서에 서명하였음을 인정한 자 전원의 서명 기타 부가 사항. 서명의 인정이

법률상의 대리인, 양수인 또는 임의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한 자의 서명 기타 부가사항

(b) 등기법에 따라 해당 문서에 관해 심문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의 서명 기타 부가사항

(c) 문서의 서명과 관련하여 등기관의 면전에서 이루어진 금전의 지불 또는 물건의 인도, 그리고 서명과 관련하여 등기관의 면전에서 이루어진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의 수령의 승인

문서에 서명하였음을 인정한 사람이 그 사실을 문서에 기재하기를 거절한 경우에는, 등기사무관은 문서를 등기하되 동시에 그러한 거절이 있었음을 각주로 기입하여야 한다(동법 제58조 제2항).

등기사무관은 해당 문서에 이루어진 모든 기입사항에 날짜와 자신의 서명을 부기한다(동법 제59조).

4.3.6 절차의 완료

이상의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등기관은 해당 문서의 복사본이 편철되어 있는 등기공부의 번호와 해당 페이지를 기재하고 "등기완료(registered)"라고 기재된 확인서를 발행한다. 확인서에는 등기사무관이 서명 날인하고 날짜를 부기함으로써 해당 문서가 등기법에 기한 절차에 의해 등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28]

4.4 등기에 따른 법률효과

① 그 재산이 동산이냐 부동산이냐에 상관없이, 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재산 관련 문서(유언장은 제외)는, 해당 재산과 관련한 구두의 합의 또는 선언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동법 제48조). 다만 해당 구두의 합의 또는 선언이 점유의 이전을 수반하고 또

28) 그동안 미얀마의 정치 체제의 변동이 빈번하여 등기제도의 안정성이 낮았고, 또 (ii) 당사자가 등기에 수반하는 비용의 부담을 꺼리면서 실무상으로는 부동산등기를 하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토지행정국(Land Administration Office)의 기록에 마지막 등기소유자 이후 해당 부동산에 소유권을 가지는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 자 모두와 미등기 前 소유자를 피고로 하여 "진정한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승소를 하게 되면 법원으로부터 "해당 미등기 전 소유자를 해당 부동산의 전 소유자로서 등기소에 등기하는 것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받게 된다. 진정한 소유자는 그 판결을 근거로 하여 부동산의 전 소유자의 명의를 변경해서 이전등기를 행한다.

현행법 하에서 유효한 양도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등기법 제17조 또는 재산이전법이나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등기가 필요한 문서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a) 해당 문서에 기재된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않으며, (b) 관계 당국에 해당 문서를 채택할 어떠한 권한도 부여하지 않고, (c)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해당 부동산에 효력이 미치는 거래의 증거 또는 위에 언급한 권한을 주는 거래의 증거로 될 수 없다(동법 제49조). 즉, 미얀마의 등기법은 등기를 부동산 양도의 효력 발생 요건으로 하고 있다.

③ 등기법 제17조 제1항 (a)-(d) 또는 18조 (a), (b)에 규정된 그와 같은 모든 문서들은, 유효하게 등기가 이루어지면, 해당 재산에 대한 모든 미등기 문서(법원의 판결 또는 명령이 아닌 것)에 대하여, 그 미등기 문서가 등기된 문서와 같은 성질의 것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동법 제50조 제1항).

④ 등기된 문서는 등기된 때로부터가 아니라, 그 등기가 요구되었거나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그 문서가 효력이 발생하였을 그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동법 제47조).

5. 용익 물권

미얀마에 있어서 재산법에 관한 앞서 언급한 중요 법률들 중에서 용익 물권을 규율하고 있는 법률은 찾지 못하였다. 그런데 미얀마의 등기법에서 1년 단위나 기간이 1년을 넘는 부동산 임대차 또는 1년 단위로 차임을 지급하는 부동산 임대차에 관한 문서는 그 등기가 강제되고 있고(등기법 제17조 제1항 (d)), 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 부동산 임대차 및 등기법 제17조에 규정이 없는 임대차에 관한 문서는 임의로 등기할 수 있도록(등기법 제18조 제1항 (c))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미얀마에 있어서는 부동산 임대차에 용익물권적 성격이 부여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추측된다(물권으로서의 임대차).[29]

이 등기법의 규정들을 받아 재산이전법도 1년 이상의 부동산 임대는 등기문서(registered instrument)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재산이전법 제107조), 1년 미만의

29) 학자들은 임차권을 채권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물권으로 할 것이냐는 어떤 논리필연적인 귀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각국의 입법정책에 달린 것으로 본다(곽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XV]・채권(8), 박영사, 1997, 50쪽, 각주 25(민일영 집필)). 오늘날 임차권을 채권으로 이해하는 독일에 있어서도 과거 게르만법은 임차권을 일종의 물권으로 파악하였고, 프로이센일반란트법(ALR)에서는 부동산임차권을 물권의 하나로서 규정한 바 있다. 영미부동산법에서도 부동산임차권을 물권으로 파악하고 있다(김상용, 비교계약법, 법영사, 2002, 255쪽; 김상용, 채권각론(상)[계약법], 법문사, 1999, 331쪽).

부동산 임대의 경우에는 등기문서에 의해서도 할 수 있지만, 구두의 합의와 부동산의 점유 이전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재산이전법 제108조).

임대차계약 기간은 특약, 관습법 또는 관행에 의해 정하여지지만, 이것이 없으면 1개월(농지 또는 제조업 용지의 경우는 1년)로 매우 짧고, 매월말로부터 15일 전(농지 또는 제조업 용지의 경우는 6개월 전)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서면에 의한 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동법 제106조).

한편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할 수 있다(동법 제115조). 그밖에, 제3자가 임대인을 승계한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계인은 임차인의 선택에 의해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6. 담보 물권

담보 물권에 대한 단행 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며, 재산이전법과 계약법에서 각각 영국법에서 유래하는 여러 가지 물적 담보 제도를 발견할 수 있다. 물적 담보로 가장 중요한 것은 Mortgage(저당권)[30]이며 재산이전법 제4장에 이에 대한 관련 규정들을 두고 있다. 그밖에 미얀마에 있어서 Pledge(동산질권), Charge(토지부담) 및 Lien(유치권)이 물적 담보로서 기능한다. 이하에서는 Mortgage를 중심으로 하여 서술하되, 다른 담보 물권들의 개략적인 내용도 살펴볼 것이다.

6.1 Mortgage

Mortgage는 대출에 의해 실행되었거나 실행될 금전의 지급, 현재나 장래의 부채, 특정의 책임을 발생시키게 될 약속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특정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는 것이다(재산이전법 제58조 (a)).

Mortgage가 설정되더라도 담보 부동산의 점유는 담보권 설정자에게 남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고 이 점에서 Pledge와 구별되는 것이지만, 미얀마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있거나 후술하는 Usufructary Mortgage(사용수익형 Mortgage) 등 다양한

30) 관례에 따라 Mortgage를 일단 '저당권'으로 번역하지만, 후술하는 것처럼 미얀마법상의 Mortgage는 우리의 저당권과 그 기본적인 내용을 달리 한다. 따라서 본문의 담보 물권들은 원래의 용어를 그대로 쓰되 필요한 한도에서만 우리 법률용어로 번역하였다.

경우에 부동산의 점유가 담보권자에게 이전한다.

부동산양도제한법은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보유한 회사에 대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보유한 회사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모두 금지하므로(동법 제3조, 제4조) 외국인은 Mortgage를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외국인투자법상의 허가를 신청할 때에 특별히 토지 관련 정부부처로부터 면책명령(exemption order)을 얻은 경우에는 외국인도 사용토지에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고 한다.[31]

6.1.1 Mortgage의 종류

재산이전법 제58조는 미얀마에 있어 다음과 같은 6종류의 Mortgage를 인정한다.

(a) Simple Mortgage(단순 Mortgage. 재산이전법 58조 (b)) : 담보권 설정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 담보권자가 점유의 이전 없이 담보로 제공된 담보물을 매각해서 대금을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다. 우리의 저당권(민법 제356조)와 같다.

(b) Mortgage by Conditional Sale(조건부매매형 Mortgage. 재산이전법 58조 (c)) : 담보권 설정자가 형식상 담보물을 매각하는 것으로 하되, 특정 날짜에 피담보채무의 지급불이행이 있는 경우 매각이 완전히 유효하게 되고, 반대로 지급이 이루어지면 매각이 무효가 되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재산을 이전・반환하기로 하는 조건이 붙은 것이다. 단 조건이 매각의 효력을 발생시킬 서류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Mortgage가 설정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우리의 매도담보와 유사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c) Usufructary Mortgage(사용수익형 Mortgage. 재산이전법 58조 (d)) : 담보권자에게 담보물의 점유를 이전하거나 이전할 것을 약속하고, 담보권자는 피담보채권이 변제되기까지 담보물을 유치하여 담보물에서 생긴 임대료 또는 이익을 수령함으로써 채무의 이자나 피담보채권에 충당하는 것이다. 저당권에 기한 수익관리에 대해서는 최근 일본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32]

(d) English Mortgage(영국식 Mortgage. 재산이전법 58조 (e)) : 특정 날짜에 피담보채무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담보물을 담보권자에게 완전히 이전하지만, 약속처럼 피담보채무가 지급된 경우에는 담보권자는 담보권 설정자에게 담보물을 다시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의 양도담보와 유사하다.

(e) Mortgage by deposit of title-deed(권원증서 예탁형 Mortgage. 재산이전법 58조 (f))

31) 박정훈, 앞의 논문, 19쪽.

32) 이에 대해서는 生能長幸, 物上代位と収益管理, 有斐閣, 2003, 290쪽 이하 참조.

: Rangoon, Moulmein, Bassein, Akyab, Mandalay 또는 대통령이 관보로 고시하는 도시에 사는 사람이 담보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담보권을 설정해 줄 목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권원증서(document of title)를 교부하는 것이다.

(f) Anomalous Mortgage(변칙형 Mortgage. 재산이전법 58조 (g)) : 위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Mortgage이다.

6.1.2 Mortgage의 설정

Mortgage는, 피담보채권의 원본이 100루피 이상인 경우, 권원증서 예탁형 Mortgage를 제외하고는 등기문서(registered instrument)에 담보권 설정자와 2명 이상의 증인이 서명하고 등기법에 따라 Mortgage를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즉 등기는 저당권의 효력발생요건이다. 반면에 피담보채권의 원본이 100루피 미만인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방법 또는 담보물의 인도만으로도(단순 Mortgage 제외) 부동산 Mortgage가 효력이 발생한다(동법 제59조). 부동산 Mortgage가 회사에 의해 설정되는 경우에는 이밖에도 회사법이 요구하는 등기도 추가로 필요하다.

6.1.3 Mortgage의 소멸과 환취권의 상실

피담보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후에는 담보권 설정자는 언제든지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Mortgage를 소멸시킬 수 있다. Mortgage가 소멸하면, 담보권 설정자는 담보권자를 상대로 저당증서(mortgage-deed)와 담보물에 대해 담보권자가 가지는 모든 서류의 반환, 담보권자가 담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담보물의 반환, 그리고 담보권 설정자의 비용으로 담보권 설정자에게 담보물에 대한 권리를 재이전(혹은 담보권 설정자가 지시하는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담보권자의 권리가 소멸되었음을 승인하는 문서의 교부와 등기를 요구할 수 있다(재산이전법 제60조).

한편 계약상 특약이 없는 한, 담보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후 담보물에 대한 환취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또는 피담보채권이 변제될 때까지는 언제라도 담보권 설정자의 환취권(right to redeem)을 상실시키는 취지의 명령을 법원에 소구할 수 있다. 환취권 상실 절차와 그러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담보권자에 대해서는 재산이전법 제67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6.1.4 Mortgage의 실행

Mortgage의 실행 방법에 대해서는 재산이전법과 민사소송법[33]에 규정되어 있는데, 주로 Mortgage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압류의 절차 및 담보물 매각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① 법원을 통한 담보물의 매각: 원칙

계약상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담보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후 담보물에 대한 환취명령이 내려지거나 피담보채권이 변제될 때까지는 언제라도 담보물의 매각을 법원에 소구할 수 있다. (재산이전법 제67조). 그 매각소송 절차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별표 1(First Schedule)의 제34조(Order) 제3항에 규정되어 있다. 매각은 법원에 의해 진행되며 매각대금은 매각 비용을 공제한 후 담보된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다.

매각대금이 법원에 납입된 경우에도 담보권 설정자 기타 환취권을 가지는 자는 법원이 선언한 채무액 및 매각대금의 5%에 상당하는 액수의 보상금을 법원에 지급하면, 법원에 대해서 환취권의 종국명령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상금은 매각대금과 함께 담보물의 매수인에게 지급된다.

② Mortgage의 사적(私的) 실행(임의 매각) : 예외

담보권자는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이 있은 후 일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법원의 개입 없이 담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할 권한을 가진다(재산이전법 제69조). 이 경우에 담보권자는 담보물의 전부 또는 일부로부터 수입을 수수할 재산관리인(receiver)을 선임할 수 있다. 재산관리인은 담보권 설정자의 대리인으로 간주되며, 재산관리인의 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담보권 설정자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진다(재산이전법 제69A조).

다만 미얀마에 있어서 Mortgage의 실행은 법원을 통한 담보물의 매각이 압도적이며, Mortgage의 사적(私的) 실행은 매우 예외적이라고 한다.[34]

33) 현재 사용되고 있는 민사소송법은 '버마법전(法典)'의 것으로 1909년의 것이다(Daw Thin Thin Nwe, "The Procedure Dealing With Civil Suits in Myanmar Judiciary", 慶應法學 第27号, 慶應義塾大學校法學研究所, 2013, 77쪽).

34) 金子由芳, 法の実施強化に資する立法支援のありかた ミャンマー向け経済法制支援を素材として, 平成15年度 独立行政法人 国際協力機構 客員研究員報告書, 独立行政法人国際協力機構 国際協力総合研修所, 2004, 15쪽.

6.2 Pledge

Pledge는 채무의 지급 또는 약속 이행의 담보로서 동산에 대한 점유를 이전하는 것이다(계약법 제172조). Pledge가 설정되면, 담보권자는 채무의 지급 또는 약속의 이행, 채무의 이자 그리고 점유 또는 담보물의 보존을 위한 필요비를 담보할 목적으로 담보물을 점유할 수 있다(동법 제172조). 그러나 계약에 정함이 없는 한, 담보된 채무 또는 약속 이행 이외의 다른 채무 또는 약속 이행의 담보로서 담보물을 점유해서는 안된다(동법 제173조 1문).

채무나 약속의 불이행이 있으면, 담보권자는 담보권 설정자를 상대로 하여 그 이행을 소구하고 담보로서 담보물을 유치하거나 아니면 담보권 설정자에게 통지를 하고 담보물을 매각할 수 있다(동법 제176조). 단, 실제로 매각될 때까지는 담보권 설정자는 채무의 지급 또는 약속의 이행과 함께 해당 불이행으로 발생한 비용을 지급하고 담보물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동법 제177조). 질권의 선의취득도 가능하다(동법 제178A조).

6.3 Charge

Charge는 법령의 적용 또는 당사자의 행위에 의해 어느 사람의 부동산이 상대방에 대한 금전의 지불을 담보할 경우에, 이러한 거래가 Mortgage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 설정되는 것을 말한다. Charge는 Mortgage와 달리, 담보물에 대한 권리의 이전을 수반하지는 않는다. 부동산의 Charge에 관해서는, 재산이전법의 Simple Mortgage에 적용되는 규정이 가능한 한 그대로 적용된다(재산이전법 제100조). 따라서 외국인의 부동산 보유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미얀마에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Charge의 설정을 받을 수 있다.

6.4 Lien

Lien에는 Particular Lien(특별유치권)과 General Lien(일반유치권)의 두 종류가 있다. Particular Lien은 도급의 목적에 따라 목적물에 대해 노동 또는 기능의 행사를 포함한 역무를 제공하고 있는 수급인이 이러한 역무에 대해서 적정한 보수를 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다(계약법 제170조). 반면에 General Lien라 함은, 은행업

자, 도매상, 고등법원의 변호사 및 증권중개인이 일반 채권을 위한 담보로서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다(동법 제171조). 우리의 상사유치권과 유사하지 않은가 짐작된다.

Ⅴ. 결론에 대신하여

위에서 필자는 미얀마의 사법제도와 법원・검찰・변호사 조직의 구성 및 운영 현황 그리고 부동산 소유권 취득을 중심으로 한 민사법의 중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2011년 군사정권이 물러난 이후로 미얀마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2016년 아웅산 수치 여사를 실질적 수반으로 한 진정한 민간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그 변화의 흐름이 보다 가속화될 전망이다. 2015년 12월 현재 미얀마의 상황을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인적・물적 인프라가 현격히 뒤쳐져 있어 국내・국제적인 변화의 요구와 속도에 전체적으로 발을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개혁・개방에 맞추어 즉각적으로 새로운 법률들이 제정되거나 기존의 법률들이 개정되어야 하고 외국인 투자자나 연구자를 위하여 그러한 법률들이 곧바로 영어로 번역되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새로운 법률들은 모두 연방 법무부에 의해 영어로 번역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지만(연방 법무부법 제12조), 외국인투자법, 경제특구법, 노동관계법 등 외자유치를 위하여 시급한 몇몇 법령들을 제외하고는 최근에 제정된 많은 법령들의 공식적인 영어번역판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법률의 영문번역을 전담하는 연방 법무부 법령심사・기초부의 능력과 인원 부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직원의 부족 및 전문성 저하는 길게 보면 사회주의 독재정권 및 그 뒤를 이은 군사정권의 외부세계에 대한 폐쇄적 정책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번역을 위한 전문적인 사전조차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고, 또한 번역된 법률들도 그 의미내용이 불명료하거나 개념어가 올바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일도 많다.[35]

한편 군부는 1988년 학생 주도의 전국적인 민주화시위가 일어나자 민주화운동의 중심인 양곤대학을 1992년까지 폐쇄하였고, 그 후 잠시 문을 연 양곤대학은 1997년부터 2000년까지 3년 이상에 걸쳐서 다시 폐쇄되는 등 대부분의 대학에서 오랜 기간 동안 정상적인

35) TMI總合法律事務所, ミャンマ-國 ミャンマ-法令に係る情報收集業務ファイナルレポ-ト 平成 26年 8月, 獨立行政法人 國際協力機構(JICA), 2014, 11쪽 이하.

대학교육과 학문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36]

현행 미얀마법은 영국령 인도에서 형성된 인도법전(法典)을 이식한 법규의 집성으로, 1958년까지의 제정법을 모은 버마법전(法典)이 버마식 사회주의 시대 및 군사정권시대를 거치면서, 일부를 제외하고 상당 부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 결과 민상사법 분야에서는 현대의 복잡・고도화된 시장경제에 부합하지 않는 전(前) 시대적인 내용을 포함한 법률이 많이 잔존하고 있으며, 그동안 임기응변적인 법령 정비에 그친 결과 법제도 전체가 체계화되지 않고 법령 간에 저촉이나 중첩이 자주 눈에 뜨인다. 이런 문제는 법의 적용・운용의 불투명성으로 이어져, 미얀마에 대한 투자와 비즈니스의 전개를 고려할 때 요구되는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다. 미얀마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령의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므로 조만간 큰 결실이 있을 것을 기대하며, 이 논문이 미얀마의 현재의 법상황을 알고자 하는 연구자나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36) 鮎京正訓(編), アジア法 ガイドブック, 298쪽.

참고문헌

1. 단행본

김상용, 비교계약법, 법영사, 2002.

곽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XV]・채권(8), 박영사, 1997.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부동산등기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2015.

박광동/조은래, 미얀마 물권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4.

법제처, 미얀마 경제・투자법령정보, 법제처, 2012.

양은용 외 3인, 미얀마투자법제, 법무부 국제법무과, 2013.

이준현, 미얀마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법제정비 지원 사례 연구, 통일부 연구보고서, 통일부, 2014.

鮎京正訓(編), アジア法 ガイドブック, 名古屋大學出版會, 2010.

金子由芳, アジアの法整備と法發展, 大學教育出版, 2010.

生能長幸, 物上代位と收益管理, 有斐閣, 2003.

森・濱田松本法律事務所, ミャンマー聯邦共和國法制度調査報告書(1次), 法務省法務總合研究所, 2013.

森・濱田松本法律事務所, ミャンマー聯邦共和國法制度調査報告(2次), 法務省法務總合研究所, 2014.

金子由芳, 法の実施強化に資する立法支援のありかたーミャンマー向け経済法制支援を素材として, 平成15年度(2003) 独立行政法人 国際協力機構 客員研究員 報告書, 独立行政法人 国際協力機構 国際協力総合研修所, 2004.

TMI總合法律事務所, ミャンマ-國 ミャンマ-法令に係る情報收集業務ファイナルレポート 平成26年 8月, 獨立行政法人 國際協力機構(JICA), 2014.

2. 학술지

강대창, “미얀마 신외국인투자법 주요 내용과 대응방안”, KIEP 지역경제 포커스 Vol. 6 No. 3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12, 1-22쪽.

박정훈, “미얀마의 토지이용제도-외국인의 토지임차 및 사용제도를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제59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12, 1-26쪽.

문흥안, “미얀마 가족법의 현황과 과제”, 가족법연구 제28권 제2호(통권50호), 한국가족법학회, 2014, 275-318쪽.

國井弘樹, “ミャンマー現地調査報告-ミャンマー法曹界の實情”, ICD NEWS 第52号, 法務省法務總合研究所, 2012, pp.6-15.

Daw Thin Thin Nwe, “The Procedure Dealing with Civil Suits in Myanmar Judiciary”, 慶應法學 第27号, 慶應義塾大學校法學研究所, 2013, pp.63-88.

H.E. U Htun Htun Oo, “Current Developments of Judicial System in Myanmar”, 慶應法學 第27号, 慶應義塾大學校法學研究所, 2013, pp.1-28.

U Sein Than, “Structure and Functions of Court in Myanmar”, 慶應法學 第27号, 慶應義塾大學校法學研究所, 2013, pp.29-46.

U Tu Jar,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Myanmar”, 慶應法學 第27号, 慶應義塾大學校法學研究所, 2013, pp.47-62.

3. 웹자료

일본 法務省 홈페이지(法務總合研究所), <www.moj.go.jp>.

일본 國際協力機構(JICA) 홈페이지, <www.jica.go.jp>.

일본 나고야대학교 法政國際教育協力研究센터(CALE) 홈페이지, <cale.law.nagoya-u.ac.jp>.

재단법인 國際民商事法센터 홈페이지, <www.icclc.or.jp>.

온라인 버마 라이브러리 홈페이지, <www.burmalibrary.org>.

[Abstract]

The Judicial System and the Property Law of Myanmar

Lee, Joon-Hyun*

In March 2011, the military domination of a long period was ended and a civilian government was launched in Myanmar. But in this civilian government were still retired army generals at the helm. Myanmar general elections were held on 8 November 2015. In this elections took the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NLD) an absolute majority of seats in both chambers of the national parliament, enough to ensure that its candidate would become president. As a result, a true democratic government will be launched from 2016 in Myanmar. Myanmar's democracy will become a huge leap forward by it and the investment will be rushed around the world in Myanmar with rapid reform and opening up of Myanmar. The past old laws are rapidly becoming replaced by the new laws in Myanmar, after the civilian government has entered in 2011.

In this paper, I have introduced an overview of the judicial system and the basic laws of Myanmar, based on the latest materials and documents I obtained. Specifically, I introduced the acceptant process of the modern laws in Myanmar and provided the important informations about the courts, the prosecutor's offices and the lawyer organizations and treated the important contents of a civil law, focused on the acquisition of land ownership in Myanmar.

[Key Words] Myanmar, Judicial System of Myanmar, Burma Code, Civil Law of Myanmar, Property Law of Myanmar

* Professor of Sogang University Law School